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 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7명(7급 7명, 8급 8명, 9급 2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8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4명, 전문경력관 다군 2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 2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103명(5급 23명, 6급 78명, 7급 2명)을 환원(8급 31명, 9급 45명, 사무운영9급 25명)하여, 총 액인건비제 현 규정에 맞추어 정원 285명(6급 19명, 7급 95명, 8급 116명, 9급 5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9명, 6급 95명, 7급 171명)하여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관세직렬로 직급조정·운영되던 관세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4명(9급 4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25명(9급 25명)을 관세직렬 정원 29명(9급 29명)으로 전환하고, 관세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의 관세직렬 정원 13명(6급 9명, 9급 4명)을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관세직렬 정원 13명(7급 13명)과 상호이체하며,

관세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공업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복수직렬(관세직렬 또는 공업직렬)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및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12.12.~12.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세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

9의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제9조 각 호의 사항 중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5조제1항 중 “각 호”를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3항제1호·제2호”를 “제3항 각 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3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를 “제12조제16항제2호”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 중 “별표 8의2의 정원 중 10명(관세주사 9명, 관세주

사보 1명)”을 “별표 8의2의 정원 중 7명(관세주사 6명, 관세주사보 1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3”을 “360”으로, 일반직 계 “362”를 “359”로, 행정사무관 “44”를 “43”으로, 관세주사 “93”을 “83”으로 하며,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공업주사 1”를 신설, 공업주사 “2”를 “1”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5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를 신설, 관세주사보 “74”를 “86”으로 하며, “관세서기 1”를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71”을 “368”로, 일반직 계 “370”을 “367”로, 행정사무관 “45”를 “44”로, 관세주사 “99”를 “98”로 하며, 관세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공업주사 1”를 신설, 공업주사 “2”를 “1”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5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를 신설, 관세주사보 “76”을 “77”로 하며, “관세서기 1”를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12”를 각각 “4,779”로, 관세주사 “757”을 “760”으로, 관세주사보 “893”을 “873”으로, 공업주사보 “55”를 “54”로, 운전주사보 “3”을 “2”로, 관세서기 “1,010”을 “1,002”로, 방송통신서기 “23”을 “22”로, 관세서기보 “771”을 “800”으로, 운전서기보 “72”를 “67”로, 위생서기보 “17”을 “16”으로, 방호서기보 “30”을 “28”로, 사무운영서기보 “86”을 “60”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22”를 각각 “4,786”으로, 행정사무관

“143”을 “139”로, 관세주사 “852”를 “841”로, 관세주사보 “914”를 “967”로, 전산주사보 “6”을 “7”로, 공업주사보 “55”를 “59”로, 방송통신주사보 “11”을 “12”로, 해양수산주사보 “60”을 “65”로, 운전주사보 “3”을 “2”로, 관세서기 “989”를 “908”로, 전산서기 “3”을 “2”로, 공업서기 “23”을 “18”로, 방송통신서기 “21”을 “19”로, 해양수산서기 “94”를 “89”로, 관세서기보 “691”을 “710”으로, 운전서기보 “72”를 “67”로, 위생서기보 “17”을 “16”으로, 방호서기보 “30”을 “28”로, 사무운영서기보 “61”을 “60”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삭제		
2)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삭제		
4)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3과	1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10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7)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1명 (7급 4명, 8급 2명, 전문 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제34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5년 3월 22일”을 “2027년 3월 22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 9명)과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행정사무관 16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관세주사 75명, 공업주사 2명, 해양수산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방송통신주사 2명, 관세주사보 148명, 공업주사보 7명, 해양수산주사보 10명, 전산주사보 3명,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관세주사보 9명과 별표 8의2의 관세주사 17명, 공업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 관세주사보 75명, 공업주사보 2명, 해양수산주사보 5명, 전산주사보 2명, 방송통신주사보 2명, 관세서기 95명, 공업서기 7명, 해양수산서기 8명, 전산서기 3명, 방송통신서기 3명, 관세서기보 53명, 해양수산서기보 2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3명(관세주사 3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3명)과 별표 8의2의 정원 7명(관세주사 6명, 관세주사보 1명)은 각각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0. (생략)	제9조(총괄분석과) ----- -----. 1. ~ 7. (현행과 같음) 8. <u>관세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9. <u>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u> 9의2. <u>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u> 10. (현행과 같음)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u> 2. <u>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u> 3. <u>관세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제9조 각 호의 사항 중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u>삭제</u> 2. <u>삭제</u> 3. <u>삭제</u>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② ~ ⑱ (생략)	--.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 ----- ----- ----- ----- 제3항 각 호의 사항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0호에서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12조제16항제2호 ----- ----- ----- ----- ----- ----- ----- -----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정원)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10명(관세주사 9명, 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 ----- ----- ----- -----. ----- ----- ----- ----- ----- ----- ----- ----- 7명 (관세주사 6명)-----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63	360	-3
일반직 계	362	359	-3
행정사무관	44	43	-1
관세주사	93	83	-10
관세주사 또는 공업주사	<신 설>	1	+1
공업주사	2	1	-1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 설>	1	+1

관세주사보	74	86	+12
관세서기	1	<삭 제>	-1
사무운영서기보	4	<삭 제>	-4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71	368	-3
일반직 계	370	367	-3
행정사무관	45	44	-1
관세주사	99	98	-1
관세주사 또는 공업주사	<신 설>	1	+1
공업주사	2	1	-1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 설>	1	+1
관세주사보	76	77	+1

관세서기	1	<삭 제>	-1
사무운영서기보	2	<삭 제>	-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812	4,779	-33
일반직 계	4,812	4,779	-33
관세주사	757	760	+3
관세주사보	893	873	-20
공업주사보	55	54	-1
운전주사보	3	2	-1
관세서기	1,010	1,002	-8

방송통신서기	23	22	-1
관세서기보	771	800	+29
운전서기보	72	67	-5
위생서기보	17	16	-1
방호서기보	30	28	-2
사무운영서기보	86	60	-26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822	4,786	-36
일반직 계	4,822	4,786	-36
행정사무관	143	139	-4
관세주사	852	841	-11
관세주사보	914	967	+53
전산주사보	6	7	+1
공업주사보	55	59	+4
방송통신주사보	11	12	+1
해양수산주사보	60	65	+5

운전주사보	3	2	-1
관세서기	989	908	-81
전산서기	3	2	-1
공업서기	23	18	-5
방송통신서기	21	19	-2
해양수산서기	94	89	-5
관세서기보	691	710	+19
운전서기보	72	67	-5
위생서기보	17	16	-1
방호서기보	30	28	-2

사무운영서기보	<u>61</u>	<u>60</u>	-1
.	.	.	
.	.	.	